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
----------	----

제출년월일 : 2001. 6. 2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 등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가 2001. 6. 30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있는 정착·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연장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 12. 31까지로 함.

(안 조례 제494호 부칙 제2조제1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6조
- 기 타 :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94호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중
“2001. 6. 30”을 “2002. 12. 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7.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 <2000. 9.30 조례 제494호></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기구) ①제5조제1항의 주민 자치과의 존속기간은 <u>2001. 6. 30</u>일까지로 한다.</p> <p>②(생략)</p>	<p>부칙 <2000. 9. 30 조례 제494호></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 ①----- ----- <u>2002. 12. 31</u>----- -----.</p> <p>②(현행과 같음)</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00. 9.30 조례 제494호></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한시기구) ①제5조제1항의 주민 자치과의 존속기간은 <u>2001. 6. 30</u>일까 지로 한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2000. 9. 30 조례 제494호></p> <p>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p> <p>제2조(한시기구) ①----- ----- <u>2002. 12. 31</u>----- -----.</p> <p>②(현행과 같음)</p>